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52
----------	-------

발의연월일 : 2026. 8. 12.

발 의 자 : 김성범 · 주철현 · 박정현
임미애 · 박균택 · 허영
김한규 · 문대림 · 윤후덕
朴芝源 · 윤준병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사업의 발전과 이용자 편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육상과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항공교통 이외의 다른 교통수단을 통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최근 항공사들이 고유가·고환율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노선 운항을 임의로 감편하거나 축소함에 따라 항공 교통이 필수적인 지역 주민들은 기본권인 이동권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항공교통 이외의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동이 현저히 어려운 지역을 운항하는 노선을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필수항공교통이용자’로 새롭게 정의하고, 국가의 항공정책기본 계획에 필수항공운송노선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보편적 권리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항공 운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수 노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한 국내항공운송사업자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국제선 운수권 등 배분 시 우대함으로써 민간 항공사의 자발적인 노선 유지를 유도하고자 함.

아울러, 필수노선 운항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운항시각을 부당하게 미활용하여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국제선 운수권 배분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과 생존권을 국가 차원에서 확고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0호 및 제4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 “필수항공운송노선”이란 항공교통 이외의 다른 교통수단을 통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국내공항이 포함된 국내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노선으로서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노선을 말한다.

41. “필수항공교통이용자”란 항공교통이용자 중 필수항공운송노선에 포함된 국내공항이 위치한 지역 중 항공교통 이외의 다른 교통수단을 통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필수항공운송노선의 지정 및 필수항공교통이용자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항

제7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필수항공운송노선에 국내 정기편을 운항하려는 자는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

함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필수항공운송노선의 지정 등) ① 항공교통 이외의 다른 교통 수단을 통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국내공항이 포함된 국내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노선을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필수항공운송노선을 지정하는 경우,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 운항 횟수 또는 최소 좌석 공급량 등 운항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운항 기준을 준수하여 항공기를 필수항공운송노선에 운항할 수 있도록 해당 국내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개선명령, 제65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항계획의 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항계획에 대한 준수 여부. 이 경우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계획의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제18조에 따라 배분된 항공기 운항시각의 준수 여부

제1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3항”을 “제1항·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권을 배분하지 아니하거나 배분된 운수권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3항”을 “제1항·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공통과이용권을 배분하지 아니하거나 배분된 영공통과이용권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제4호 중 “항공수요”를 “항공수요 또는 필수항공운송노선의 좌석공급량의 급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분된 운항시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분한 운항시각을 회수할 수 있다”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이동권 보장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분된 운항시각을 회수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분된 운항시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제27조제6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제1항제15호 중 “제4호 또는 제6호”를 “제4호·제6호 및 제6호의2”로 한다.

제6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3(필수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수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항공 운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수항공운송노선을 운항하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해당 노선을 안정적으로 운항하고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였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필수항공운송노선을 안정적으로 운항하여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한

국내항공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고, 해당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운수권 및 제17조에 따른 영공통과이용권 배분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항공운송노선을 운항하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해당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기 좌석의 일부를 필수항공교통이용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제63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제1호부터 제3호”를 “제1호부터 제4호”로 한다.

4. 항공교통서비스의 공공성

제6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9.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39. (현행과 같음) 40. “필수항공운송노선”이란 <u>항공교통 이외의 다른 교통수단을 통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국내공항이 포함된 국내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노선으로서 제7조의 2에 따라 지정된 노선을 말한다.</u> 41. “필수항공교통이용자”란 <u>항공교통이용자 중 필수항공운송노선에 포함된 국내공항이 위치한 지역 중 항공교통 이외의 다른 교통수단을 통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u>
제3조(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⑤ ~ ⑦ (생략)

<신설>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의2(필수항공운송노선의 지정 등) ① 항공교통 이외의 다른 교통수단을 통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국내공항이 포함된 국내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노선을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필수항공운송노선을 지정하는 경우,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 운항 횟수 또는 최소 좌석 공급량 등 운항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운항 기준을 준수하여 항공기를 필수항공운송노선에 운항할 수 있도록 해당 국내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개선명령, 제65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서비스에 관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항계획의 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 ④ (생략)

제16조(국제항공 운수권의 배분 등) ① ~ ③ (생략)

<신 설>

제13조(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조사) ①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항계획에 대한 준수 여부. 이 경우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계획의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 제18조에 따라 배분된 항공기 운항시각의 준수 여부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국제항공 운수권의 배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권을 배분하지 아니하거나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수권의 배분신청, 배분·회수의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 가능 여부,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영공통과이용권의 배분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영공통과이용권의 배분신청, 배분·회수의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 가능 여부,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u>배분된 운수권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u>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 ----- ----- ----- -----. 제17조(영공통과이용권의 배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공통과이용권을 배분하지 아니하거나 배분된 영공통과이용권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 ----- ----- ----- ----- -----.
--	--

제18조(항공기 운항시각의 배분 등)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항공의 공공성, 안전성 또는 이용편리성 확보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직권으로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 3. (생략)

4. 항공수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항공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 7. (생략)

③ · ④ (생략)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시각의 활용도 향상, 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과 항공기의 원활한 운항,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분된 운항시각의 전부 또는 일부

제18조(항공기 운항시각의 배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항공수요 또는 필수항공운송 노선 좌석공급량의 급감 등 -

5. ~ 7.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이동권 보장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가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분한 운항시각을 회수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⑥ ~ ⑧ (생략)

제27조(사업개선 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 설>

7. ~ 9. (생략)

제28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분된 운항시각을 회수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분된 운항시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7조(사업개선 명령)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 9. (현행과 같음)

제28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① -----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제2호·제4호 또는 제21
호에 해당하면 그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14. (생략)

15. 제27조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 22. (생략)

② (생략)

<신설>

-----.

-----.

1. ~ 14. (현행과 같음)

15. -----제4호·
제6호 및 제6호의2-----

16. ~ 2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의3(필수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
산의 범위에서 필수항공교통이
용자에게 항공 운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수항공
운송노선을 운항하는 국내항공
운송사업자가 해당 노선을 안
정적으로 운항하고 필수항공교
통이용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였
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제63조(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등)

① (생략)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필수항공운송 노선을 안정적으로 운항하여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한 국내항공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고, 해당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운수권 및 제17조에 따른 영공통과이용권 배분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항공운송노선을 운항하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해당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기 좌석의 일부를 필수항공교통이용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제63조(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u><신설></u>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⑥ (생략) 제65조(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국가는 항공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항공사업자”라 한다)에게 그 소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으로 융자하여 줄 수 있다. 1. 2. (생략) <u><신설></u> ② (생략)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u>항공교통서비스의 공공성</u> 5. -----제1호부터 제4호-----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5조(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①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u>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② (현행과 같음)
---	--